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9. 10. 23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9년 10월 11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19년 10월 18일

라. 상정일자: 제2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19. 10. 21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)

가. 제안이유

- 영등포구협치회의 구성을 변경하여 민간분야 위원의 확대 및 위상을 높이고, 조례에 포상 규정을 명시하여 업무의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을 고취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영등포구협치회의 구성 인원 확대(안 제9조제1항)
  - 영등포구협치회의 구성 인원을 '25명 이내'에서 '30명 이내'로 변경
- 공동의장 직위 신설 및 공동 부의장 직위 폐지(안 제9조제2항)
  - 기존 구청장 단독 의장 직위를 구청장과 선출된 민간 위원의 공동의장 직위로 변경
- 당연직 위원에 구청장 추가 명시(안 제9조제3항)
-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성비 원칙 명시(안 제9조제4항)
- 포상규정 신설(안 제26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임경태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협치기반을 강화하고 민관협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협치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하고, 민관협치 관련 공적이 현저한 구민 등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
- 주요내용으로는,
  - 안 제9조에서는 협치회의 위원 구성을 의장 1명, 부의장 2명을 포함한 25명에서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으로 확대하고, 구청장을 공동의장 및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였으며,
  - 안 제26조에서는 민관협치 관련 공적이 현저한 구민 및 단체,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검토결과,
  - 다양한 주체의 협력적 통치(Collaborative Governance)를 의미하는 협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공동의 통치, 공동의 의사결정을 위한 공동의장 및 협치회의 위원 수 확대로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,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, 또한 정책의 질을 개선하고 구민만족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구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협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, 그 밖에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58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19. 10. .  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영등포구협치회의의 구성을 변경하여 민간분야 위원 참여 확대 및 위상을 높이고, 조례에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구민,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의 동기 부여와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영등포구협치회의의 위원수를 '25명'에서 '30명' 이내로 확대(안 제9조제1항)
- 나. 공동의장 직위 신설 및 공동 부의장 직위 폐지(안 제9조제2항)
  - 기존 구청장 단독 의장 직위를, 구청장과 선출된 민간 위원의 공동의장 직위로 변경
  - 부구청장과 민간위원 중 선출된 자에 대한 공동 부의장 직위 폐지
- 다. 당연직 위원에 구청장 추가 명시(안 제9조 제3항)
  -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, 관련국장 및 협치조정관으로 함
- 라.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성비 원칙 명시(안 제9조 제4항)
  -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단서 신설
- 마. 협치 관련 유공자(주민, 단체, 공무원)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(안 제26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- 다. 협의사항
  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 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(2019. 9. 11. ~ 10. 1. /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의장1명, 부의장2명을 포함하여 25명”을 “공동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구청장이 되고,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중에서”를 “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”로, “공동부의장”을 “공동의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관련국장과”를 “구청장, 관련국장 및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”를 “구청장이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,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6조(포상)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협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관 협치 관련 공적이 현저한 구민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- ② 구청장은 민관협치 업무의 지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구성) ① <u>협치회의는 의장1명, 부의장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② <u>의장은 구청장이 되고,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공동부의장이 된다.</u></p> <p>③ <u>당연직 위원은 관련국장과 협치조정관으로 한다.</u></p> <p>④ <u>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. &lt;단서 신설&gt;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⑤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9조(구성) ① ----- <u>공동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</u> ----- -----<u>에서</u>----- ----- <u>공동의장</u>-----.</p> <p>③ ----- <u>구청장, 관련국장</u> ----- -----<u>및</u>-----.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<u>구청장이</u>----- ----- -----<u>. 다만, 특정 성별</u> <u>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</u> <u>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6조(포상) ① <u>구청장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협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관 협치 관련 공적이 현저한 구민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구청장은 민관협치 업무의 지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</u></p>
<p><u>제26조 (생략)</u></p>	<p><u>제27조 (현행 제26조와 같음)</u></p>